

의안번호	220202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계번호	24C22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 비용, 취사용 연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경로당 공동 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안 제39조의23(노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안 제 45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함 ※ 현행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9조의23(노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안 제 45조(비용의 부담)	

2. 상세 사유

가. 경로당 지원(안 제37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취사용 연료비와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인력도 지원하고 있음
 -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 서울 3,425개소, 지방 65,031개소에 개소당 2,689천원 지원 반영)
 - 경로당 급식지원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배식, 식권 검수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공익활동형), 그 외 행정 등의 지원 업무(사회서비스형)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현재 6만 4,279명 지원 중
-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690억원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의 수와 필요 비용의 규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정이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¹⁾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고,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6.9만개 중 5.9만개가 주당 평균 3.4일의 식사를 제공

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2025.5.1.

[표 1] 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현황

(단위: 개소, %, 일)

시도	경로당 수 (A)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 수(B)	B/A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합계	68,658	58,558	85.3	3.4
서울	3,609	3,090	85.6	3.3
부산	2,403	2,152	89.6	3.3
대구	1,809	1,318	72.9	3.3
인천	1,555	1,341	86.2	3.7
광주	1,380	1,291	93.6	3.6
대전	850	814	95.8	3.0
울산	836	695	83.1	3.0
세종	517	498	96.3	3.2
경기	10,020	8,391	83.7	3.1
강원	3,319	2,443	73.6	3.2
충북	4,262	3,553	83.4	4.4
충남	5,924	5,414	91.4	2.9
전북	6,860	5,536	80.7	3.6
전남	9,211	8,166	88.7	3.6
경북	8,055	7,685	95.4	3.1
경남	7,575	5,929	78.3	3.8
제주	473	242	51.2	3.9

주: 2024년 4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부식비 지원액을 조사하였으나, 지역별 자료의 정확성이 낮아 추가재정 소요 추정이 곤란
 -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합하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비에 세부 항목이 나뉘어있지 않아 점심식사 제공 목적을 위한 비용(부식비, 취사연료비, 관련 인건비 등)과 그 외의 비용 구분이 모호함
 - － 이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경로당 1개소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지원 합계액이 총 지원액을 상회하는 지역이 있는 등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아 추계에 활용하기 곤란

나.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안 제39조의23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편하도록 규정

－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보고 법 시행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표 2] 현행법상 노인복지관과 개정안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비교

구 분	정의
노인복지관 (현행법 제36조제1항제1호)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됨(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종합복지관 (개정안 제39조의22)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1. 상담 및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 관리 및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2.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노인의 질병예방,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건강검진, 건강상담, 급식, 통증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평생교육, 취미·여가,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정보화교육 서비스: 노인과 다른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사회참여·권익증진 서비스: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연계, 소득 지원, 후원·자원봉사 등 지역자원 동원 사업, 노인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 교육·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

자료: 현행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안 제39조의23제4항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기존 노인복지관 중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설치 신고할 노인복지관의 수를 알 수 없고, 신규 설치될 노인종합복지관의 수도 알 수 없음
 - 안 제45조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투입될 국고 및 지방비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